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2권 제2호(2016): 169~194

논문제출일 : 2016. 05. 13 논문심사일 : 2016. 05. 31 게재확정일 : 2016. 06. 25

Lanning 분류법에 의한 소아기호증의 차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최 용 성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박사과정)

곽 대 훈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조교수)

Lanning 분류법에 의한 소아기호증의 차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최 용 성* · 곽 대 훈**

목 차

- I. 서론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성적행위를 실행한 10명의 성범죄자 판결자료를 가지고,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한 소아기호증의 차별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Lanning의 분류법을 적용한 결과, '성도착증'을 가진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정신과적 질환여부'가 달라졌으며, 또한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하위 유형인 가해자(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에 의해 Lanning의 분류유형이 달라지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가해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 "진단기준 여부", "성적선호도 여부", "정신과적 질환여부"를 기준으로,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향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을 이원화하여 김혜선 외 9인의 각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 확실한 성적선호도를 갖고 '있는' 폐쇄형 (아동만)의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에는 김장호 외 4인이 해당되었다. 또한,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인 김장호 외 4인은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

† 논문제출일 : 2016. 05. 13 논문심사일 : 2016. 05. 31 게재확정일 : 2016. 06. 25

*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E-mail: judo9797@daum.net

**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dkwak@cnu.ac.kr

의 진단기준에 '전부' 포함되는 '정신성적장애자'로서,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처분의 일종인 ① 치료감호처분과 ② 성충동 약물치료처분 등의 '심리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에,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 확실한 성적선호도를 갖고 있지 '않은' 비폐쇄형(아동과 성인 모두)의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에는 김해선 외 4인이 해당되었다. 또한,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인 김해선 외 4인은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일종인 ① 보안관찰 처분과 ② 전자장치 부착처분 등의 '물리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주제어: 폐쇄형 유형, 비폐쇄형 유형, 정신성적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I. 서 론

2007년 안양 초등학교 강간살인 사건(정성현), 2008년 안산 초등학교 강간상해 사건(조두순), 그리고 최근 발생한 2012년 나주 초등학교 강간상해 사건(고종석)까지 연달아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로 인해 소아기호증이 이슈화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¹⁾ 또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은 사춘기 이전인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에게 강한 성적흥분과 상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성도착증'의 일종으로, 이러한 증상은 전체 성도착증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임명호 외, 2013: 27-33). 더구나 소아기호증은 그 대상이 아동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성도착증(관음증 등)과 다르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도착증'을 가진 소아기호증성범죄자도 아동에 대한 확실한 '성적선호도

1)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13세미만 아동성범죄의 경우, 2010년 1,180건, 2011년 1,057건, 2012년 1,127건, 2013년 1,172건, 2014년 1,208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기준에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성도착증'의 일종인 소아기호증성범죄도 아울러 증가하고 있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2015: 78-87).

여부'에 의해 그 증세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아기호증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살펴 보면, 정신성적장애 성향을 가진 소아기호증성범죄자를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취급하는 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을 가진 소아기호증성범죄자를 '정신성적장애자'로 취급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신관우 외, 2010: 99-104; 함해현, 2010: 272-274). 즉, 이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Lanning의 분류법을 적용해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정신과적 질환여부'를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위 Lanning의 분류법을 적용한 결과, 아동에게 확실한 성적선호도를 갖고 '있는'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는 충동조절장애, 불안장애, 성적발달 등 '정신성적장애' 성향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아동에게 확실한 성적선호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는 우울장애, 알코올 장애, 조현병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과 연관성이 있었다(임명호 외, 2013: 27-33; Raymond, NC. & Ohlerking, F, 1999: 786; Lanning, Kenneth V, 2010: 35-39).

또한,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하위 유형인 가해자(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에 의해 Lanning의 분류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신성적장애' 성향을 가진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는 DSM -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전부' 포함되는 폐쇄형 유형의 소아기호증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을 가진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는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되는 비폐쇄형 유형의 소아기호증과 연관성이 있었다(Lanning, Kenneth V, 2010: 35-39; American P sychiatric Association, 2013 : 685, 697-700).

따라서 본 연구는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가해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 "진단기준 여부", "성적선호도 여부", "정신과적 질환여부"를 기준으로,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을 이원화하여 김해선 외 9인의 각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그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소아기호증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제시와 예방책을 강구하였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소아기호증의 정의

소아기호증(*pedophilia*)은 고대 그리스어인 '*pedo*'(소년, 어린이)와 '*Philia*'(사랑, 우정)라

는 합쳐진 단어에서 유래하였다(Michael, C. Seto, 2008: 229-269)²⁾. 또한, 이 용어는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2013년에 발간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에서 정의한 학문적·이론적 개념으로서, 소아기호증의 임상적 진단기준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최용성, 2016: 7-11), 형법전에 규정한 강간과 같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DSM-5에서는 ‘정신성적장애’(Psychosexual Disorder)의 세 가지 하위범주 중 하나인 ‘소아기호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에 대한 강한 성적공상과 성적충동 혹은 성적행동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상태’이다(Bartol, Curt R. & Bartol, Anne M, 2013: 415, 52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 685, 697-700). 즉, 소아기호증은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 성인이 갖는 의식적인 ‘성적관심’으로, 아동과 성적인 접촉(성적흥분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손을 대거나, 아동에게 자신을 손을 대개하는 행위)을 하거나³⁾, 또는 아동에 관한 성적인 공상에 의해 마스터베이션(Masturbation)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David, Finkelhor. & Sharon, Araji, 1986: 210-216). 다만, 성인이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 ‘성적관심’이 없거나, 성인에 관한 성적인 공상에 의해 마스터베이션을 행하는 경우에는 소아기호증이 아니라 일반 성폭력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DSM-5에서는 소아기호증의 하위 유형인 가해자(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Specify Whether)에 따라, 아동에게만 지속적 성적관심을 가지는 폐쇄형 유형(Enclosed Type)의 소아기호증과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지속적 성적관심을 가지는 비폐쇄형 유형(Non Enclosed Type)의 소아기호증으로 이원화하여 분류하고 있다(Bartol, Curt R. & Bartol, Anne M, 2013: 41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697-700). 즉, 전자는 성인이 아동에 대해 ‘강한’ 성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성인이 아동에 대해 그 보다 ‘약한’ 성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David, Finkelhor . & Sharon, Araji, 1986: 219-221).

따라서 성인이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에 대해 ‘강한’ 성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는 아동에게 확실한 성적 선호도가 ‘있는’ 폐쇄형 유형의 소아기호증에 해당

2) 그리스어인 ‘Pedophilia’의 용어를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소아기호증으로 번역이 되고 있다(최용성, 2016: 8).

3) 아동과 성적인 접촉의 형식은 ① 가해자(범죄자)가 과거에 아동들과 주고받은 성적이지 않은 관계의 정도, ② 아동들과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③ 각각의 연령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변한다. 즉, 아동과 제한된 인간관계를 가진 가해자는 애무하거나 어루만지거나 하는 행위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성기와 성기, 입과 성기의 접촉을 원한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아동)가 서로 친밀할수록 성기와 성기, 입과 성기의 접촉은 더욱 증대된다(Bartol, Curt R. & Bartol, Anne M, 2013: 417).

되는 반면에, 성인이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 그 보다 ‘약한’ 성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는 아동에게 확실한 성적 선호도가 ‘없음’ 비폐쇄형 유형의 소아기호증에 해당된다(전대양 외, 2011: 213-216; Bartol, Curt R. & Bartol, Ann e M, 2013: 375-37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2013: 697-700).

2.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

DSM-5에서 정의한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진단기준에 의해 ‘아동’에게만 성적관심을 가지는 ‘폐쇄형 유형’의 소아기호증으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시켜야 한다. 단,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성적관심을 가지는 ‘비폐쇄형 유형’의 소아기호증에 해당된다(전대양 외, 2011: 213-216; Bartol, Curt R. & Bartol, Anne M, 2013: 375-37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697-700).

- A.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 반복되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B. 이러한 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하여야 한다.
 - C. 연령이 적어도 16세 이상이며, 진단기준 A에서 언급한 아동보다 적어도 5세 연상이어야 한다.⁴⁾
- 주의: 12세 또는 13세 아동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후기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가해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 구분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을,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가해자(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를 이원화하여 구분한 결과, 아래 <표-1>과 같다(Lanning, Kenneth V, 2010: 35-39; Bartol, Curt R. & Bartol, Anne M, 2013: 375-376; American

4) 가해자(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연령이 16세 이상이거나 16세 미만이라도, 상대방(피해아동)보다 최소한 다섯 살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된다.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685, 697-700).

1) 폐쇄형 유형

아동에게만 지속적 성적 관심을 갖는 ‘폐쇄형’ 유형의 소아기호증은, 정신과적 질환 중에 충동조절장애, 불안장애, 성적발달 등 DSM-5에서 정의한 ‘정신성적장애’(Psychosexual Disorder)⁵⁾와 매우 연관성이 있었다(임명호 외, 2013: 27-33; Raymond, NC. & Ohlerking, F, 1999: 786). 또한, ‘폐쇄형’ 유형을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진부’ 포함을 시키면, 이는 아동에게 확실한 성적 선호도가 ‘있는’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 해당된다(Lanning, Kenneth V, 2010: 35- 3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685, 697-700).

2) 비폐쇄형 유형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지속적 성적 관심을 갖는 ‘비폐쇄형’ 유형의 소아기호증은, 정신과적 질환 중에 우울장애, 알콜사용장애, 조현병 등 DSM-5에서 정의한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⁶⁾와 매우 연관성이 있었다(임명호 외, 2013: 27-33; Raymond, NC. & Ohlerking, F, 1999: 786). 또한, ‘비폐쇄형’ 유형을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을 시키면, 이는 아동에게 확실한 성적 선호도가 ‘없는’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 해당된다(Lanning, Kenneth V, 2010: 35-3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685, 697-700).

5) 정신성적장애(Pychosexual Disorder)는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정신병학적(Psychogenic)인 데서 기인하는 성적 장애로, 이러한 장애가 심인성(Psychogenic)내지 생물학적(biogenic Organic) 원인에 의해 발병하고 있다(임명호 외, 2013: 27-33).

6)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이나 학대, 착취, 폭력, 유기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등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임명호 외, 2013: 27-33).

<표-1> 폐쇄형과 비폐쇄형 유형의 비교

구 분		폐쇄형 유형	비폐쇄형 유형
공통점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하위 유형이며, '사춘기 이전'인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성적관심'을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	가해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	'아동'에게만 성적관심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성적관심
	가해자의 성적대상 '진단기준 여부'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 '전부'포함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 '일부'포함
	가해자의 성적대상과 '성적선호도 여부'	아동에게 확실한 성적선호도 '있음'	아동에게 확실한 성적선호도 '없음'
	가해자의 성적대상과 '정신과적 질환여부'	정신성적장애 (충동조절장애, 불안장애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 (우울장애, 알코올사용 장애 등)
	가해자의 성적대상에 의한 'Lanning의 분류'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출처: 최용성(2016; p. 20-21, 인용 및 재구성)

3) 소결론

따라서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가해자(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를 이원화하여 구분한 결과, '폐쇄형' 유형의 소아기호증에 해당하는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는,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 진단기준에 '전부' 포함이 되는 '정신성적장애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는 정신의학적 관점인 '결정론적 시각'에 기초하여 그 성적 행동의 원인을 밝혀내어 치료하고 예방하는 '환자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에, '비폐쇄형' 유형의 소아기호증에 해당하는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는, DSM-5

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이 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는 법률적 관점인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그 성적 행동에 책임을 묻어 처벌하고 예방하는 ‘범죄자의 성격’을 가진다.

4. 선행연구의 검토

Lanning의 분류법에 따라 ‘아동성도착증’을 가진 소아기호증성범죄자도 아동에 대한 확실한 ‘성적선호도 여부’에 의해 그 증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전대양, 2006: 24-29; Lanning, Kenneth V, 2010: 35-39). 하지만, 기존의 소아기호증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정신성적장애’ 성향을 가진 소아기호증성범죄자를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취급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신관우 외, 2010: 99-104; 함혜현, 2010: 272-274). 본 연구는 이 문제를 시정하고자 Lanning의 분류법을 적용하여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정신과적 질환여부’를 분류해 차별화를 기하였다.

따라서 Lanning은 가해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 “진단기준 여부”, “성적선호도 여부”, “정신과적 질환여부”에 의해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행동패턴을 이원화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그 유형으로 1)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2)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가 있다(이용혁 외, 2007: 191-197; Lanning, Kenneth V, 2010: 35-3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685, 697-700).

1)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는 아동에 대한 확실한 성적 선호도가 있으며, 자신의 내부적 성적환상(*Erotic Fantasy*)과 성적형상(*Erotic Imagery*)이 아동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등의 원인이 문제가 되어 아동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실행하게 된다. 즉, 이 유형은 아동에게 확실한 성적 선호도가 있는 ‘정신성적장애자’로서, 이는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전부’ 포함이 되는 폐쇄형 유형(아동만)의 소아기호증에 해당된다. 또한, 폐쇄형 유형에 해당하는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를 세 가지 하위유형으로 세분화 하면, (1) 유괴의 유형, (2) 내성적인 유형, (3) 가학적인 유형으로 구분된다(이용혁 외, 2007: 191-197; Lanning, Kenneth V, 2010: 35-3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685, 697-700).

(1) 유괴의 유형

유괴의 유형은 관심이나 애정, 선물 등으로 아동을 유혹한 다음 자신의 주위로 유인한 뒤

성적행위를 실행한다. 즉, 이 유형은 장기간에 걸쳐 아동을 유혹하며, 동시에 여러 아동들과도 관계를 갖는 등 다수의 아동들이 개입되어 있다.

또한, 유괴의 유형은 MTC(Massachusetts Treatment Center) 분류유형 중 하나인 고착형 유형의 소아기호증성범죄자⁷⁾와 비슷하며,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애정에 대한 냉소적인 욕구를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거나 아동이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에게 정신적 협박과 신체적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2) 내성적인 유형

내성적인 유형은 아동에 대해 성적 선호도가 있지만, 아동을 피어내는 상호 관계적 기술(기만적 수단)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유형은 주로 놀이터나 학교 앞 주변을 돌며 안면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다. 또한, 내성적인 유형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부적응적인 유형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동에게 성적 선호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가학적인 유형

가학적인 유형은 자신의 폭력과 아동에 대한 성적 만족을 결합시킴으로서,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다. 즉, 이 유형은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서, 성적 각성을 일으키거나 성적 만족을 채운다. 또한, 가학적인 유형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며, 아동과 이전에 안면이 없는 낯선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아동을 유괴하기 위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며, 이 때문에 다른 선택적 유형의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는 다르게, 아동의 신체에 해를 가한 후 살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학적 유형은 전형적으로 아동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우월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힘없는 아동을 상대로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살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즉, 그 피해자가 남자 아동이면 성기가 절단되어 입안에 있으며, 여자 아동이면 잔인하게 신체를 훼손시키는 등 그 공격자체가 아동의 성기에 집중되어 있다.

2)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는 아동에 대한 확실한 ‘성적 선호도’는 없지만, 다양한 외부적

7) MTC(Massachusetts Treatment Center) 분류체계는 강간죄의 형식에 따라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행동패턴을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유형으로 ① 고착형, ② 퇴행형, ③ 착취형, ④ 공격형이 있다(Bartol, Curt R. & Bartol, Anne M, 2013: 384-386).

충격으로 인해 발생된 복합적인 원인이 문제가 되어 아동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실행하게 된다. 즉, 이 유형은 아동에게 확실한 성적 선호도가 없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서, 이는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이 되는 ‘비폐쇄형’ 유형(아동과 성인 모두)의 소아기호증에 해당된다. 또한, 비폐쇄형 유형에 해당하는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를 네 가지 하위유형으로 세분화 하면, (1) 퇴화된 유형, (2) 도덕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 (3) 성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 (4) 부적응적인 유형으로 구분된다(이용혁 외, 2007: 191-197; Lanning, Kenneth V, 2010: 35-3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685, 697-700).

(1) 퇴화된 유형

퇴화된 유형은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이 문제가 되어 일시적으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부족한 대처기술이 기본적 특징이다. 즉, 외부적 관점에서 이 유형은 성인과의 개인적 관계뿐만 아니라 성적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혼과 실직 그리고 알코올의 남용 등 다양한 상황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동을 의제성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퇴화된 유형은 아동과의 성적관계 가능성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우연적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며, 그 피해 대상이 대부분 여자 아동이다. 그리고 이 유형은 아동과 관련된 포르노를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MTC 분류유형 중 하나인 고착형 유형의 소아기호증성범죄자 보다는 그 수가 적다.

(2) 도덕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

도덕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은 ‘안 될게 있겠는가?’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동을 성적피해 대상으로 만든다. 즉, 이 유형은 알코올이나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각성이 일어났을 때, 아동이 그 장소에 있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또한, 도덕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은 탐정 잡지나 피학적인 성인 포르노를 가꿈 수집하기도 한다.

(3) 성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

성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은 언뜻 보면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비슷하나, 실제로는 아동에 대해 성적 선호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이 유형의 범행 동기는 단순한 성적 지루함에서 벗어나 성적인 실험을 시도하려는 것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은 성적인 시도자로서 감금 및 가혹행위, 스와핑, 다른 비정상적 성적활동 등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여성과의 다양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즐기고 있다. 또한, 자신의 친자식이나 양자 등을 이러한 성적인 실험에 참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포르노를 수집하는 등의 행동패턴을 보인다.

(4) 부적응적인 유형

부적응적인 유형은 아동과 성적인 행위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정신병이나 정신지체 등을 앓고 있는 자를 포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가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집에서 은둔하는 별난 성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적응적인 유형의 대부분은 성적 접촉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하지 않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지는 않지만, 애무나 키스, 핥기 등의 다른 성적인 실험을 아동에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가진 부적응적인 유형은, 자신들은 아동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과의 관계와는 달리 아동과의 관계에서 통제력을 가진다고 느끼지만, 그 중 소수는 아동을 살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유형이 포르노를 수집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아동과 관련된 것이 아닐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내용

본 연구는 각종 통계자료와 문헌조사 및 판례 등을 활용하였으며, 또한 분석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이나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문을 직접 인용하여 각 사례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위해 2000년 이후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한 성범죄 관련사건 중 소아기호증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례를 그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법원의 판결문 자료수집이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2007년 안양 초등학교 강간살인 사건(정성현)과 2008년 안산 초등학교 강간상해 사건(조두순) 등을 비롯하여 소아기호증성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10건의 사례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총 18건의 관련사건 판결문을 확보하였으나, 사건개요 및 내용 등이 충분하지 않는 8건은 그 사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10건의 각 판결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김장호, 정성현, 이명철, 김수철, 고종석은 아동과 관련된 음란물을 다소 소지하거나 지속적으로 시청하는 등의 아동

음란물중독으로 인하여, 아동에게만 지속적 성적집착을 갖는 ‘정신성적장애자’라는 특이점이 있었다. 즉, 이러한 아동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성향과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성적환상에 집착하게 되며, 또한 뇌의 전두엽인 인지적 능력을 손상시켜 뇌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써 자신의 일탈적 성적환상과 현실을 판단하지 못하는 ‘성적충동조절능력’ 등의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최용성, 2016: 140-141). 따라서 김장호 외 4인은 ‘정신성적장애자’로서 아동을 현실세계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왜곡된 성향으로 인해 아동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무감각적이고 폭력적인 성적집착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공통된 특징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김혜선, 송영철, 조두순, 김길태, 김점덕은 불우한 가정환경, 학대 또는 폭력, 알코올의 중독, 자신의 무능력함, 사회에 대한 좌절감 등의 자아존중감상실로 인하여,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지속적 성적목적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라는 특이점이 있었다. 즉, 이러한 자아존중감상실은 죄책감·공감능력 결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행동통제력 등이 부족하게 되며, 또한 뇌의 전두엽인 감정기능이 손상돼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는 세르토닌이 부족하게 되어 사소한 일에도 강한 공격적 성격을 표출하는 등의 성격이상 증상을 보이게 된다(최용성, 2016: 141-142). 따라서 김혜선 외 4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서 자신의 알코올 중독과 행동통제력의 부족으로 인한 무감각성과 그리고 강한 공격적 성격의 분출로 인해 여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악화되면서 아동을 공격적 또는 성적목적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공통된 특징이 나타났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2000년 이후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성적행위를 실행한 성범죄자를,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로 분류하여 그 사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가해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 “진단기준 여부”, “성적선호도 여부”, “정신과적 질환여부”를 기준으로,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를 이원화하여 김혜선 외 9인의 각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간의 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차별적인 소아기호증성범죄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러한 방안은 소아기호증성범죄 예방과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한 소아기호증의 차별적 특성”에 대한 가설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연구가설 A>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를 이원화하여 각 사례를 분석하면, 가해자(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와 ‘진단기준 여부’ 그리고 ‘성적선호도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B>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를 이원화하여 각 사례를 분석하면, 가해자(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성적대상에 의한 ‘성적선호도 여부’에 따라 각각의 ‘하위 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C>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를 이원화하여 각 사례를 분석하면, 가해자(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성적대상에 의한 ‘정신과적 진단여부’에 따라 각각의 ‘예방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문헌자료의 이론과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한 사례분석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그 사례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인터넷 자료가 아닌 법원에 직접 판결자료를 요청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각 해당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가해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 “진단기준 여부”, “성적선호도 여부”, “정신과적 질환여부”를 기준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각 해당사례를 분석한 뒤 “정신과적 질환여부”를 비교해 이에 대한 예방책의 분석도 같이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가설 A>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를 이원화하여 각

사례를 분석하면, 가해자(소아기호증성범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와 ‘진단기준 여부’ 그리고 ‘성적선호도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김해선 외 9개의 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내부적 성적환상이 아동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등의 원인이 문제가 되어 아동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실행한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에는 김장호, 이명철, 정성현, 김수철, 고종석이 해당되었다. 또한,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인 김장호 외 4인은 아동과 관련된 음란물을 다소 소지하거나 지속적으로 시청하는 등의 ‘아동음란물중독’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확실한 성적 선호도가 있는 ‘정신성적장애자’로서, 이는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전부’ 포함되는 폐쇄형 유형(아동만)의 소아기호증에 해당되었다.

이에 반해, 다양한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된 복합적인 원인이 문제가 되어 아동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실행한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에는 김해선, 송영철, 조두순, 김길태, 김점덕이 해당되었다. 또한,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인 김해선 외 4인은 불우한 가정 환경, 학대 또는 폭력, 알코올의 중독, 자신의 무능력함, 사회에 대한 좌절감 등의 ‘자아존중감상실’로 인하여 아동에게 확실한 성적 선호도가 없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서, 이는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되는 ‘비폐쇄형’ 유형(아동과 성인 모두)의 소아기호증에 해당되었다.

2. <연구가설 B>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를 이원화하여 각 사례를 분석하면, 가해자(소아기호증성범자)의 성적대상에 의한 ‘성적선호도 여부’에 따라 각각의 ‘하위 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Lanning의 분류법상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에 해당하는 김장호 외 4인을 그 ‘하위 유형’인 (1) 유괴의 유형, (2) 내성적인 유형, (3) 가학적인 유형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표-2>와 같다.

(1) 유괴의 유형

관심이나 애정, 선물 등으로 아동을 유혹한 다음 자신의 주위로 유괴를 한 뒤 성적행위를 실행하는, 유괴의 유형의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는 정성현이 해당되었다.

(2) 내성적인 유형

아동을 피어내는 상호 관계적 기술(기만적 수단)이 부족하여, 주로 안면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내성적인 유형의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는 김장호, 이명철이 해당되었다.

(3) 가학적인 유형

자신의 폭력과 아동에 대한 성적 만족을 결합시킴으로서,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가학적인 유형의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는 김수철, 고종석이 해당되었다.

<표-2> Lanning 분류법을 적용한 각 사례분석 결과

심리유형	심리분류		심리요소	김해선	김장호	송영철	정성현	이명철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김점택	고종석	
Lanning의 분류	DSM-5에서 정의한 폐쇄형 유형 소아기호증에 해당 & 선택적 소아기호증성 범죄자 (아동에 대한 성적선호도는 '있음')	유괴의 유형	장기간에 걸쳐 관심이나 애정, 선물 등으로 아동을 유혹한 다음, 자신의 주위로 유괴를 한 뒤 성적 행위를 실행함 동시에 여러 아동들과 관계를 갖는 등 다수의 아동들이 개입되어 있으며,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거나 또는 아동이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적 협박과 신체적 폭력을 사용함	X	X	X	O	X	X	X	X	X	X	
		내성적인 유형	아동에 대해 성적선호도를 갖고 있지만, 아동을 피어내는 상호 관계적 기술(기만적 수단)이 부족함 주로 놀이터나 학교 앞 주변을 돌며 안면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름	X	O	X	X	O	X	X	X	X	X	X
		가학적인 유형	자신의 폭력과 아동에 대한 성적 만족을 결합시킴으로서, 피해아동의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함 아동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우월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힘없는 아동을 상대로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살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음	X	X	X	X	X	X	X	O	X	O	O

출처: 최용성(2016; p. 138-139, 인용 및 재구성)

2) Lanning의 분류법상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에 해당하는 김해선 외 4인을 그 ‘하위 유형’인 (1) 퇴화된 유형, (2) 도덕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 (3) 성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 (4) 부적응적인 유형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표-3>와 같다.

(1) 퇴화된 유형

사회에 대한 부적응과 낮은 자존감이 문제가 되어 일시적으로 아동을 성적 대용물로 인식하게 되는, 퇴화된 유형의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는 김해선, 송영철, 김점덕이 해당되었다.

(2) 도덕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

알코올이나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각성이 일어났을 때, 아동이 그 장소에 있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도덕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의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는 조두순이 해당되었다.

(3) 성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지루함에서 벗어나, 아동을 그 성적 실험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성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의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는 김길태가 해당되었다.

(4) 부적응적인 유형

아동과 성적인 행위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부적응적인 유형의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는 해당자가 없었다.

<표-3> Lanning 분류법을 적용한 각 사례분석 결과

심리유형	심리분류		심리요소	김	김	송	정	이	조	김	김	김	고
	DSM-5에서 정의한 비폐쇄형 유형 소아기호증에	퇴화된 유형		해	장	영	성	명	두	길	수	점	종
Lanning의 분류				선	호	철	현	철	순	태	철	덕	석
			다양한 외부적 충격(이혼과 실직 그리고 알코올의 남용 등)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이 문제가 되어, 아동을 성적 대용물로 인식하게 됨 아동과의 성적관계 가능성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O	X	O	X	X	X	X	X	O	X

진단기준에 ‘전부’ 포함되는 ‘정신성적장애자’로서, 정신의학적 관점인 ‘결정론적 시각’에 기초하여 그 성적 행동의 원인을 밝혀내어 치료하고 예방하는 ‘환자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정신성적장애자’로서 환자의 성격을 가진 김장호 외 4인에게는 범죄적 성향의 소멸이 목적 이므로, ① 「치료감호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치료감호처분과 ②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성충동 약물치료 처분 등의 ‘심리적 예방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인 김해선, 송영철, 조두순, 김길태, 김점덕은 정신과적 질환 중에 우울장애, 알콜사용장애, 조현병 등 DSM-5에서 정의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매우 연관성이 있었다. 즉, 이러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자는 자신의 알코올 중독과 행동통제력의 부족으로 인한 무감각성과 그리고 강한 공격적 성격의 분출로 인해 여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동을 공격적 또는 성적목적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인 김해선 외 4인은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서, 법률적 관점인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그 성적 행동에 책임을 묻어 처벌하고 예방하는 ‘범죄자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서 범죄자의 성격을 가진 김해선 외 4인에게는 범죄적 억제가 목적 이므로,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보호관찰 처분과 ② 「동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 처분 등의 ‘물리적 예방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성적행위를 실행한 10명의 성범죄자 판결자료를 가지고,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한 소아기호증의 차별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해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가해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 “진단기준 여부”, “성적선호도 여부”, “정신과적 질환여부”를 기준으로,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을 이원화하여 각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Lanning의 분류법에 의한 소아기호증의 차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설 A·B·C”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 확실한 ‘성적선호도’를 갖고 있는 폐쇄형(아동만)의 선택

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김장호, 정성현, 이명철, 김수철, 고종석이 해당되었다. 또한, 김장호 외 4인을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① 선택적-유괴의 유형의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는 정성현이, ② 선택적-내성적인 유형의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는 김장호, 이명철이, ③ 선택적-가학적인 유형의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는 김수철, 고종석이 각각 해당되었다. 다만, 선택적-가학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김수철과 고종석은 아동에게 확실한 성적선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성적으로 학대를 하는 등 다른 선택적 유형의 소아기호증성범죄자와는 차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선택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 해당하는 김장호 외 4인은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전부’ 포함되는 ‘정신성적장애자’로서, 정신의학적 관점인 ‘결정론적 시각’에 기초하여 그 성적 행동의 원인을 밝혀내어 치료하고 예방하는 ‘환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자인 김장호 외 4인은 책임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그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김장호 외 4인은 행위책임의 원칙상 처벌로는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이 불가능하고, 또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로서 보안처분의 일종인 ㉔ 치료감호처분과 ㉕ 성충동 약물치료처분 등의 ‘심리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 확실한 ‘성적선호도’를 갖고 있지 않은 비폐쇄형(아동과 성인 모두)의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김해선, 송영철, 조두순, 김길태, 김점덕이 해당되었다. 또한, 김해선 외 4인을 네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① 상황적-퇴화된 유형의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는 김해선, 송영철, 김점덕이, ② 상황적-도덕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의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는 조두순이, ③ 상황적-성적으로 무차별적인 유형의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는 김길태가 각각 해당되었으며, ④ 상황적-부적응적인 유형의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는 해당자가 없었다. 다만, 이 유형에 해당하는 김해선 외 4인 모두 외 부적 스트레스나 알코올 중독, 행동통제력의 부족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강화시키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상황적-부적응적인 유형의 소아기호증성범죄자가 없는 특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상황적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 해당하는 김해선 외 4인은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서, 법률적 관점인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그 성적 행동에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예방하는 ‘범죄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자인 김해선 외 4인은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우려가 낮다. 그러므로 김해선 외 4인은 책임주의 원칙상 처벌로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이 가능하고, 또 위법한 행위로 인해 형벌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형벌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로서 형사처분의 일종인 ㉠ 보호관찰 처분과 ㉡ 전자장치 부착처분 등의 ‘물리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도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분석 자료가 10건에 불과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하는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둘째,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를 직접 대면하고, 면담한 뒤 사례분석을 실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판결문상의 문헌자료만을 가지고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었다. 셋째, 기존 다중매체에서 큰 이슈화된 아동성범죄사건을 위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다보니, 모든 소아기호증성범죄자를 대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한 좀 더 많은 소아기호증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소아기호증성범죄자는 매우 다양한 세부유형이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에 따른 임상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10건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된 아동성범죄자 10명을 실증적으로 유형화한 연구라는 점, Lanning의 분류법을 적용한 객관적인 방식에 입각하여 ‘정도착증’을 가진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정신과적 질환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한 점, 그리고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하위 유형인 소아기호증성범죄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점에서 는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대검찰청. (2015). 「2015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pp 78-87.
- 신관우, 정우일. (2010). “충동조절장애의 책임능력 판단기준”, 「한국범죄심리연구」, 6(3): pp. 99-104.
- 임명호 외 4인. (2013). “성적 가해자의 정신과적 진단 및 임상특성 : 성중독·성적과다, 우울·불안증상을 중심으로”, 「대한법의학회지 학술논문」, 37(1): pp. 27 -33.
- 이용혁 외 1인. (2007). 「범죄자들의 심리추적 프로파일링」, 서울: 수사연구소, pp. 191-197.
- 전대양 외 6인. (2011). 「(새)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형설출판사, pp. 213-216, 236-239.
- 전대양. (2006). “연쇄강간범의 범죄심리학적 특성”, 「한국범죄심리연구」, 2(1): pp. 24-29.
- 최용성. (2016). “소아기호증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pp. 7 -11, 20-21, 138-139, 140-142.
- 함혜현. (2010). “이상성욕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과 처우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6(2): pp . 272-274.

2. 국외문헌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pp. 685, 697-700.
- Bartol, Curt R. & Bartol, Anne M. (2013),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Approach”*,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pp. 375-376, 384-386, 388-389, 417, 528.
- David, Finkelhor. & Sharon, Araji. (1986), “A sourcebook on child sexual abuse”,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pp. 210-216, 219-221.
- Lanning, Kenneth V. (2010), *“Child Molesters: A Behavioral Analysis, For Professionals Investiga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Fifth Edition), pp. 35-39.
- Michael, C. Seto. (2008), *“Pedophilia and sexual offending against children: theor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 229-269.
- Raymond, NC. & Ohlerking, F. et al. (1999), *“Psychiatric comorbidity in pedophilic sex o*

ffender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5): pp. 786-8.

3. 기타자료

- 광주고등법원 「2001.7.11. 선고 2001노404」 판결, 강간등 살인(김해선).
- 광주고등법원 「2013.1.13. 선고 2012고합942」 판결, 강간등 살인(고종석).
- 부산지방법원 「2010.6.25. 선고 2010고합164」 판결, 강간등 살인(김길태).
- 서울고등법원 「2008.10.17. 선고 2008노1708」 판결, 강간등 살인(정성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8.20. 선고 2010고합320」 판결, 강간등 상해(김수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4.13. 선고 2006고합40」 판결, 강간등 살인(김장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3.27. 선고 2009고합6」 판결, 강간등 상해(조두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5.23. 선고 2008고합74」 판결, 강간등 상해(이명철).
- 제주지방법원 「2007.8.9. 선고 2007고합67」 판결, 강간등 살인(송영철).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18. 선고 2012고합129」 판결, 강간등 살인(김점덕).

(ABSTRACT)

A Study on Discriminatory Characteristics of Pedophilia by Classification Method of Lanning

Choi, Yong-Sung* · Kwak, Dae-Hoon**

In this study, a research on differentiated features of pedophilia by classification method of Lanning was progressed based on court cases for 10 sexual offenders of pedophilia who committed sexual offenses by targeting children before puberty (generally below 13 years old) since 2000. As a result of applying classification method of Lanning, 'psychiatric disease status' of sexual offender of pedophilia having 'paraphilia' was changed and additionally, classification type of Lanning was also changed by 'designation status' of sexual target of offender (sexual offender of pedophilia) that is sub-type of pedophilia defined by DSM-5.

Therefore, in this study, each case of 9 persons in addition to Kim, Hae-Sun was comparatively analyzed by dualizing selective and situational sexual offenders of pedophilia type based on "designation status", "diagnosis standard status", "sexual preference status" and "psychiatric disease status" for sexual target of offender that present differentiated features of sexual offender of pedophilia by classification method of Lann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4 persons in addition to Kim, Jang-Ho were applicable to closed type (children only) selective sexual offender of pedophilia type 'having' confirmed sexual preference for the children before puberty. In addition, 4 persons in addition to Kim, Jang-Ho who were selective sexual offender of pedophilia were 'sexual psychopath' being totally included in diagnosis standard of pedophilia defined by DSM-5 and as their punishment effect is unable to be expected, it would be reasonable to take 'psychological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rime & Forensic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First Author), E-mail: judo9797@daum.net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rime & Forensic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E-mail: dkwak@cnu.ac.kr

preventive action' like ① therapeutic custody ② medication for libido.

On the other hand, 4 persons in addition to Kim, Hae-Sun were applicable to non-closed type (both children and adult) situational sexual offender of pedophilia type 'without' confirmed sexual preference for the children before puberty. In addition, as those 4 persons who were situational sexual offender of pedophilia were persons having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being 'partially' included in diagnosis standard of pedophilia defined by DSM-5 and their punishment effect is unable to be expected as their criminal responsibility is 'acknowledged', it would be reasonable to take 'physical preventive action' like ① security surveillance ②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that are a type of criminal punishment.

Key words : open type, enclosed type, psychosexual disorder,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selective pedophilia, situational pedophilia.